

조기재취업수당 안내 (취직)

1.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 조건 (2024. 1. 1. 이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)

- (상용근로자)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직하여 12개월 (이직일 기준 65세이상자는 6개월)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
 - 1-1.((건설) 일용근로자) 취업일자 기준 매달 10일 이상 12개월간 연속하여 근로한 경우
예) 3월 15일 취업인 경우, 매월 15일~다음달 14일 사이에 10일 이상 12개월 확인(*매월 1일~말일이 아님에 유의)
- ※ "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임금액 이상"으로 취직한 경우는 제외 (고시금액: 월5,740,000원(세전, 각종 제수당 포함 임금총액))
- 최초 입사일 기준 12개월 내에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된 경우는 가능
 - 수차에 걸쳐 재취업한 경우 기간 단절 없이 12개월(65세이상 6개월) 이상 계속 고용 시 최초 입사일 기준 잔여 일수 산정 (예) 6.30. 마지막 근무 후 7. 1. 재입사)
 - 사업장 귀책 사유(폐업·도산 또는 권고사직만 해당)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 9일 이내(공휴일 포함) 재취업하여 계속 고용 시 "계속 근로"로 인정
- 재취업일 전일 기준으로 잔여 소정급여일수가 1/2일 이상인 경우 (*소정급여일수는 취업드림수첩 참조)
 -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것 (재취업일 기준)
 -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채용이 약속되어 있지 않을 것
 -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(동일 사업주)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가 아닐 것 (시행규칙 제108조 제1항)
 - 이직 전 사업이 인수·합병·분할되거나 영업을 양도·양수하였을 경우 인수·합병·분할 또는 영업을 양수한 사업의 사업주
 - * (사례)국공립학교 직원(기간제 교사 등)이 같은 시·도 소재 국·공립학교에 재입사하는 경우(사업주가 시·도 교육감으로 동일)
 - ★자영업·예술인·노무제공자 실업급여 수급자가 아닐 것
 - 기타 사항
 - 공무원으로 채용시 조기재취업수당 비해당 (다만, 별정직, 임기제 공무원으로 취업한 경우 제외)
 - 상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사외이사·비상임(근) 이사·감사 등은 조기재취업수당 대상 취업에 비해당
 - 병역법에 따른 복무(승선근무예비역, 전문연구요원, 산업기능요원 등) 비해당(25. 7. 1. 이후 수급자격신청자부터 해당)

2. 제출서류 [서울동부고용복지+센터 홈페이지] → [정보마당] → [서식자료실] 다운로드 가능

-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
 - 재직증명서 1부 (재취업일 기준 12개월(65세 이상자는 6개월)이 지난 이후 사업장에서 발급)
 - 근로계약서 사본 1부
 - (필요시) 대상기간 월별 세전 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(임금명세서 등)
 - (사업장 변경 된 경우) 경력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 - (수급신청 후 1개월 이내 취업자) 취업확정통보일 증빙 자료(합격공고, 이메일, 문자 또는 사업주 확인서)
 - (공무원, 공기업 등 공공기관입사자) 취업확정통보일 증빙 자료(합격공고, 이메일, 문자 또는 사업주 확인서)
- ※ 해외취업의 경우: 상기서류 포함하여 여권사본, 취업비자, 해당국가발행한 취업허가증, 현지 근로계약서, 임금명세서 및 급여통장사본 12개월분 등

3. 청구방법

- ①방문 ②고용24 온라인 신청(www.work24.go.kr) ③우편(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, IT벤처타워 동관4층 서울동부고용센터 실업급여팀) ④팩스 (02-6915-4045) ☎ 02-2142-8905 (송파구, 강동구)

4. 지급액 : 구직급여일액 × 잔여급여일수(재취업일~수급기간만료일) × 1/2

5. 유의사항

- (중요★) 취업일과 고용보험 취득일자는 반드시 동일해야 함
 - 청구시점: 취업일 기준 12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3년 이내
 - * 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대상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
- ※ 사전신청 대상:

이직일 기준 65세이상 수급자중 6개월 이상 계속 근로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, 취업일(고용보험 취득)부터 신청 가능 (다만, 6개월이상 계속 근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상 근로이후 사후신청)
- 처리기한: 서류 접수일로부터 공휴일 제외 14일 (공휴일 포함시 18일 정도)

조기재취업수당 안내 (자영업)

1.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 조건 (2024. 1. 1. 이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)

-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14일이 지난 후, 12개월(이직일 기준 65세 이상자는 6개월) 이상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경우
 -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함(연속 12개월 분)
 - 자유직업종사자(보험설계사, 학습지교사, 학원강사, 단단계 방문판매원, 채권추심원, 개인택시, 개별 용달, 퀵배송, 컴퓨터프로그래머, 샵매니저, 자동차딜러 등 프리랜서)로 등록·위촉된 경우에도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(연속 12개월 분)
 - 사업자등록 대신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비영리사업(교회, 복지시설, 어린이집 등)의 경우에는 영리 목적이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을 수 있음
- 사업개시일 전일 기준으로 잔여 소정급여일수가 1/2일 이상인 경우 (*소정급여일수는 취업드림수첩 참조)
-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것 (사업개시일/재취업일 기준)
- ★자영업·예술인·노무제공자 실업급여 수급자가 아닐 것
- 사업자등록증만 발급받고 실제 사업 영위 사실을 증빙할 수 없을 경우 지급 불가

2. 제출서류 [서울동부고용복지+센터 홈페이지] → [정보마당] → [서식자료실] 다운로드 가능

-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
-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1부
- 부가가치 과세표준 증명원 (국세청 발급)
- 부동산(사무실)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
- 세금계산서, 매입 또는 매출전표(월 1건 이상) 등 사업 영위를 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서류

< 직종별 제출 서류 >

- 보험설계사, 학습지교사 등의 경우: 위촉증명서, 영업수당에 따른 수당명세서 사본(12개월분)
- 자유소득자의 경우: 프리랜서 계약서, 수당 입금내역(12개월분), 사업장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증빙서류 등
- 개인택시의 경우: 사업자등록증, 차량등록증, 택시조합비 납부영수증 및 주유(전기 및 가스) 충전영수증 등(12개월분), 주유카드 복사본
- 개인용달의 경우: 개인택시와 상동,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, 화물운송 조합비 납부영수증(12개월 분)

※ 사업영위 증빙서류는 연속적으로 12개월분이 제출되어야 함.

3. 청구방법

- 방문
- 고용24 온라인 신청(www.work24.go.kr)
- 우편(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, IT벤처타워 동관4층 서울동부 고용센터 실업급여팀)
- 팩스(02-6915-4045)
- ☎ 02-2142-8905 (송파구, 강동구)

4. 지급액 : 구직급여일액 × 잔여급여일수(재취업일~수급기간만료일) × 1/2

5. 유의사항

- 사업개시 후 12개월 이내 사업이 변경된 경우(폐업·휴업 등)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불가
- 청구시점: 사업개시일 기준 12개월(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대상자는 6개월)이 경과한 이후부터 3년 이내
* 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대상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

※ 사전신청 대상:

이직일 기준 65세이상 수급자중 6개월이상 계속 사업운영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영위할것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신청 가능

(다만, 6개월 이상 사업영위할 것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상 사업 영위후 사후 신청)

- 처리기한: 서류 접수일로부터 공휴일 제외 14일 (공휴일 포함시 18일 정도)